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67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채현일 · 이재강 · 최혁진
허성무 · 이해식 · 양부남
허종식 · 조계원 · 이상식
차지호 · 노종면 · 김남근
강득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및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등과 같이 사회복지요원이나 하급자에게 위법하게 그 권한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과 권한없이 행정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처벌 정도를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

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등).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 ②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벌칙) ① (생략) <u><신설></u>	제7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u><삭제></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